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 경과

- 제 출 : 2007. 1. 12.(사천시장)
- 회 부 : 2007. 1. 12.(총무위원회, 의안번호 제5호)
- 상 정 : 2007. 1. 23.(제111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총무과장 엄정기)

가 제안이유

- 1)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시군구 조직 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 2) 생산적 조직운영을 위해 위축된 분야의 조직은 통·폐합하고 지역개발 가속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체제 확립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기획담당관, 정보담당관” 명칭변경, “지역전략사업추진단” 폐지 및 “체육지원단” 신설 등에 따른 분장 사무를 조정함(안 제4조, 제7조)
 - 기획담당관 ⇒ 기획감사담당관
 - 정보담당관 ⇒ 정보통신담당관
 - 지역전략사업추진단(폐지) ⇒ 체육지원단(신설)
- 2) 총무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및 사회복지과·문화관광과·환경보호과 담당 분리 등에 따른 총무국장의 사무를 정비함 (안 제5조)
 - 주민생활지원과(신설)
 - 사회복지과 분리 ⇒ 사회복지·기초생활·복지기획담당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
 - 문화관광과 체육담당 분리 ⇒ 체육지원단(체육지원담당)
 - 환경보호과 청소·자원재활용담당 분리 ⇒ 환경사업소(청소·청소시설담당)
- 3) 지역개발국 도시건축과를 2개과로 분리하고 폐지되는 수도과 업무를 신설되는 수도사업소에 이관함에 따라 지역개발국장의 사무를 정비함 (안 제6

조)

- 도시건축과 ⇒ 도시과 · 건축과 분리

- 수도과 ⇒ 수도사업소(이관)

- 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종합사회복지관 · 문화예술회관 · 행정타운사업소를 폐지하고, 수도사업소 · 환경사업소 · 신도시조성사업소 신설에 따른 명칭과 위치 규정 및 소관 사무를 정비함 (안 제14조 및 별표 2)

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
- 사업소설치운영에 관한지침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송군호)

-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2단계 시군조직 개편 및 행정환경 변화와 지역발전의 가속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체제 확립을 위한 것으로
-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조직 개편은 1단계 시군구 조직개편(06. 4~9월)에 이어 전국 시군구 131개 일반구 22개 읍·면·동 2,198개에 대해 대도시의 본청에 주민생활지원국 및 주민생활지원과 설치, 중소도시는 주민생활지원국 설치 또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하고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천시 본청 총무국 아래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8개 읍·면에는 기존 담당의 명칭 변경을, 6개 동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였으며,
- 행정환경 변화 및 지역발전의 가속화를 위한 명칭변경 2개(기획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신설 6개(체육지원단, 도시과, 건축과,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신도시조성사업소), 폐지 7개(지역전략사업추진단, 도시건축과, 수도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행정타운사업소)의 조직을 개편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위원	질의 내용	답변자	답 변 요 지
김유자 위원	○ 많은 담당(6급)이 복수직렬로 인해 기술직에 대한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아 승진의 형평성 등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총무과장 엄정기	○ 직위의 복수직렬은 인사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확보하여 조직을 활성화하고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
이정희 위원	○ 환경사업소 및 수도사업소, 신도시조성사업소 설치는 조직 개편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되는데?	”	○ 이번 조직개편은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심사숙고하여 어렵게 마련된 것임. ○ 특히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과 2회의 공개토론회와 2회의 시정조정위원회까지 갖고 고심 끝에 결정된 것임을 참고 바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 없음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일자 2007. 1. 23.

제안자 이정희 의원 외 4인

1. 수정이유

개정안의 체육지원단의 업무분장사무 중 골프장 유치업무와 각종체육시설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은 중복되므로 골프장 유치업무를 삭제코자 함.

2. 주요골자

- 개정안 제7조(여유기구) 제2항제3호의 “골프장 유치, 종포스포츠파크 조성, 각종 체육시설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중 “골프장 유치”를 삭제하고 “종포스포츠파크 조성, 각종 체육시설 조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여유기구)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골프장 유치, 종포스포츠파크 조성, 각종 체육시설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중 “골프장 유치”를 삭제하고 “종포스포츠파크 조성, 각종 체육시설 조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현행 · 개정안 ·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7조(여유기구) ①영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u>지역전략사업추진단을</u> <u>여유기구로</u> 설치·운영한다.</p> <p>② <u>지역전략사업추진단</u>에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p> <p>2. 대외업무 벤치마킹 및 지역특화사업 등 전략사업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p> <p>3. <u>골프장 유치, 종포스포츠</u> <u>파크 조성, 각종체육시설 조성</u> 등에 관한 사항</p>	<p>제7조(여유기구) ①영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u>체육지원단을</u> <u>여유기구로</u> 설치·운영한다.</p> <p>② <u>체육지원단</u>에는 다음 사무를 분장 한다.</p> <p>1. <u>체육진흥에 관한 사항</u></p> <p>2. <u>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u>에 관한 사항</p> <p>3. <u>골프장 유치, 종포스포츠</u> <u>파크 조성, 각종체육시설 조성</u> 등에 관한 사항</p>	<p>제7조(여유기구) ①(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p>3. <u>종포스포츠파크 조성, 각종체육시설 조성</u> 등에 관한 사항</p>